

신고번호 : B18-150415

발급번호 : B18-150415-001

출력일자 : 2018-04-13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1. 회사명 : (주)케빅 (사업자등록번호 : 204-81-30648 )
- 2. 대표자 : 정병철
- 3. 소재지 : (063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4길 5 (도곡동)
- 4. 매출액 : 170.28 억원 (소프트웨어분야 매출액 : 0.00 억원)
- 5. 상시종업원수 : 85 명 (소프트웨어기술자 : 3 명)
- 6. 신고일자 : 2018-04-04

7.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8.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

※ 2017년 12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04 월 13 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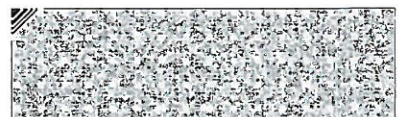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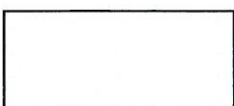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10mmX297mm [백상지 80g/m<sup>2</sup>]

#### 조달청 입찰참가용

원본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공공SW입찰 등 제출시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www.swit.or.kr>)의 '증명서위변조 확인' 메뉴에서 열람가능)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유의사항

## 1.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안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한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 기재되는 금액이며, 대기업의 공공사업의 입찰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대기업은 전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8천억 이상이면 80억, 8천억 미만이면 40억이며 중소기업은 "없음"입니다.

대·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독립성 기준 등 수행기관에서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업은 대·중소기업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공공사업입찰참여금액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행기관에 정정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상이한 신고확인서를 입찰 등에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는 관련규정에 의해 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결산 완료된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 또한 신고하셔야 하며, 이 자료를 근거로 공공사업 입찰참여금액을 갱신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변경신고하지 않은 신고확인서로 입찰 참여 시 입찰서류 미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